

수입제품 안전성 검사란?

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안전관리 대상 제품인 경우에 통관절차 완료전에 안전성조사를 하는 제도입니다(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9조의3)

검사 절차

- 1 수입화물 선별시스템을 통한 검사대상 선별
- 2 세관에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성적서 요청
- 3 인증자료와 검사대상 제품(현품)의 비교 분석

사후 조치

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(미인증, 표시사항 미표시, 허위표시 등)은 시정조치나 통관보류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☑ 제품 문의 및 면제확인

구분	대표번호
KC인증 관련 전반사항	1381
KC인증 면제확인서 발급	1833-4010 (내선 2번)

☑ KC 인증 취득

기관명	대표번호
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	080-808-0114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	1577-0091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	1899-7654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	02 2102-2500
KATRI시험연구원	02-3668-3000
KOTITI시험연구원	02-3451-7000
FITI시험연구원	02-3299-8000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

☑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아닌데도 검사를 진행해야 하나요?

-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, 통관단계 수입제품이 제품 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, 세관장 확인대상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단계 수입제품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인 경우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☑ 제품의 표시사항은 꼭 통관전에 해야 하나요?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시행규칙에 따라,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제품은 반드시 통관 전에 KC마크 및 주의경고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☑ 제품의 인증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'제품안전정보센터'에서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 상단 메뉴 중 '정보공개' → '인증정보 검색'



안전하고 바른 수입을 위한

제품안전관리제도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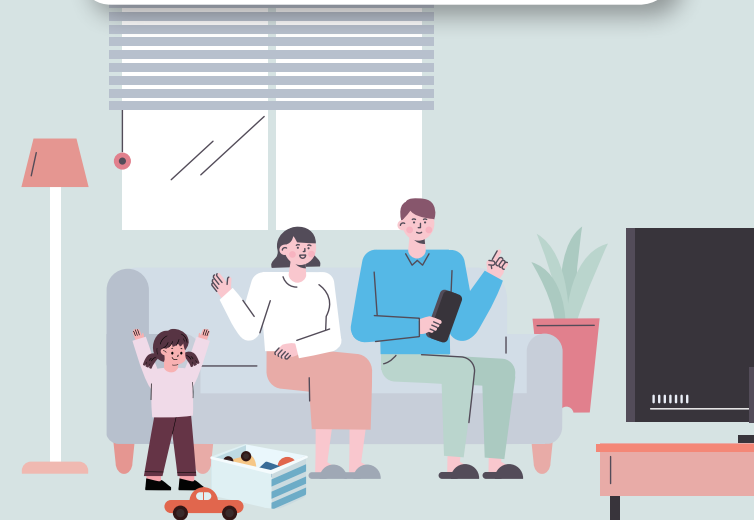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

KC안전인증은
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


KC(Korea Certification) 마크는?

KC마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,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·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마크입니다.



어떤 제품을 수입할 때 KC인증을 취득해야 하나요?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, KC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
전 기 용 품

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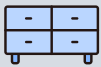


전기용품 세부품목 바로보기 ▶



생 활 용 품

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.



생활용품 세부품목 바로보기 ▶



어 린 이 제 품

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.



어린이제품 세부품목 바로보기 ▶



제품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?



안전인증 등의 표시(KC인증마크) 및 해당 제품의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.

- ① KC마크
- ② 안전인증(안전확인) 번호
- ③ 모델명
- ④ 제조국명
- ⑤ 제조자명(수입자명)
- ⑥ 제조년월
- ⑦ A/S 연락처
- ⑧ 개별 품목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



▶ 품목별 표시사항 바로보기



전기용품



생활용품



어린이제품

*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활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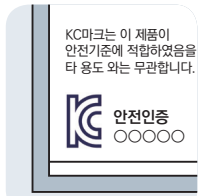
표시사항은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?

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,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품에
직접 표시



제품 포장에
표시



별도 부착된
라벨에 표시



표시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기준

-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, 판매중지, 개선,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0조
 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4조
-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, 안전인증 등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9조
 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41조

* 세부 내용과 과태료 등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5 참조